##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4

발의연월일: 2024. 7. 15.

발 의 자: 강경숙・이해민・차규근

황운하 · 서왕진 · 박은정

김영호 · 김준형 · 김재원

신장식 • 문정복 • 박홍배

조 국 · 정동영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대학 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논문 표절 의혹 등 연구부정행위가 제보되어도 연구부 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인 대학등에서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를 미루는 등 대학등의 자율적인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연구윤리 확 립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하락하고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등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자체 검증에 따른 신뢰 및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여 연구윤리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법률 제 호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정한다"를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 제출, 제6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제7항에 따른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로 한다.

- ⑤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결과를 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대학등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⑦ 교육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⑤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 검
	증을 위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
	우 조사결과를 조사 종료 후 3
	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되거나 대학등에서 교육부장관
	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해
	당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직
	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u>&lt;신 설&gt;</u>	⑦ 교육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등
	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u>할 수 있다.</u>
⑤ 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	<u>8</u>

의 작성,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및 제4항에 따른 대학등 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u>정한다</u>.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 제출, 제6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제7 항에 따른 업무 위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 한다.